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제 364 호

1973. 4.20.

시보

차 례

◎ 조 례		
제 764 호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3
제 765 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장학금조례	5
◎ 규 칙		
제 1298 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6
제 1299 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식제	7
◎ 고 시		
건설부고시제 9 호	지하고속철도제 1호선 지적승인 일부변경 고시	8
제 5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지하고속철도시설) 실시계획일부변경고시	8
제 52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운동장시설) 실시계획인가	16
◎ 공 고		
제 73 호	환지처분 (역촌토지구획정리지구)	16
제 78 호	시영버스 운전원 모집공고	17
◎ 사 령		1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601

361

1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 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4월 1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64 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대상자) ① 부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 (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 1.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 2. 하천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 전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 없이 당해 토지등을 타인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

과한다.

③ 제 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 (공사준공 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 1항 내지 전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에 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 3 조 (부과액의 결정등) ① 부담금의 액은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 (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은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한다.

제 4 조 (토지등의 가액조사) ①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부과시의 토지가액은 공사준공후 1년2월 이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시기) 부담금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6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공고) 시장은 공사시행시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사의 종류
- 2. 공사의 시행지
- 3. 공사의 착공 년월일
- 4. 공사의 준공 년월일
- 5. 공사비
- 6. 부과 구역
-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 또는 금전

으로 부담할때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일때

제8조(납부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할 때에는 부담금의종류, 금액, 납부장소 및 납기틀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부) 부담금이 다액이어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게 대하여 연리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안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부담금의 납부통지서를 받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강제징수) 부담금을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 한다.

제12조(권한위임)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공사시행 공고된 공사또는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하천 수익자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현저한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하며 이 경우에 이조례의 시행일을 공사 공고일로 부터 보고 이 조례 시행일의 토지등의 소유자를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 본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 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시설수용 아동장학금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

197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65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시설
수용 아동 장학금 조례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아동복지법 제 2 조에 규정된 요보호아동으로서 재능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중 사상이 건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중,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우수한 성적으로 상급학교(단중,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고성적순위가 신입생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재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전 2 항의 해당자 이외에 학교장이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3 조 (장학생의 신청)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과 아동복지 시설의 대표자의 추천서와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장학생의 선발) 전조의 규정
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는 서류검사를 한후 시장이 선발한
다 .

제 5 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②장학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장에게 지급한다 .

제 6 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
로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 1 .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 2 . 소행이 방정하지 못할 때
- 3 . 탁월한 재능을 인정할 수 없을
때
- 4 .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5 . 휴학하였을 때
- 6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 (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규 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98호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3조 제 2항중 "전항의"를
"제 1항의"로 하여 제 4항으로 하
며 "제 3항"을 "제 5항"으로 하
고 동조에 제 2항과 제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1

②납기경과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오물수거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수수료의 100/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기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된 오물수거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오물수거수수료의 100/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제 1항 및 전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회관직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4월 2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99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직제

제 1 조 (직 무)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세근로자에게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숙식 및 후생시설을 제공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 2 조 (관 장) ①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 조 (공 무 원) 회관에 관장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1970년 5월 20일자 서울특별시규칙제 923 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합숙소 직제는 이 규칙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고 시

◎ 건설부고시제 9 호

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지적승인일부변경고시

1. 당사관내 지하고속철도 제 1 호선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지적승인변경조서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 및 도시
계획국 도시계획과 지하철건설본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1973. 4 . 17.

건설부장관

구 분	종 별	폭	연 장	변 경 구 간		비 고
				기 점	종 점	
변경후	서울지하 고속철도	18-22.0	710	동대문구 전농동 591	동대문구 전농동 602	총 9542.4 미터중 710 미터구간일부 변경
변경전	"	9.6-22.8	"	"	"	

별 첨 : 도면표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51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지하고속철도시설)
실시계획일부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지하
고속철도시설) 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적서는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 및 지하철 건설

본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4. 17.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시행지 : 서울역 - 청량리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지하고속철도제 1 호선 시설
3. 사업의 착수 : 실시계획변경일로 부
터 1 주일이내

준공 : 74.12.30.

4. 수용 및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5. 변경인가내용						
구 분	종 별	목	연 장	변 경 구 간		비 고
				기 점	종 점	
변경후	서울지하교 속철도	18-22	710	동대문 전농동 591	동대문 전농동 602	총 9,542.4 미터중 710미 터 구간 일부
변경전		9,6- 22,8	〃	〃	〃	변경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동대문구 전농동	591-10	대	7.2	591-56	대	2.8		시유지	
		591-12	〃	61.4	591-57	〃	3.2	전농동 590-5	조병석	
		591-13	〃	4.1	591-58	〃	1.3	창신동 581-28	이형빈	
		591-15	〃	22.7	591-59	〃	2.3	〃	〃	
		591-18	〃	63.7	591-60	〃	15.5	청량리동 172-6	박승환	한국신탁 은행저당

순 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동대문구 전농동	591-19	대	60.3	591-61	대	20.3	용두동 118-15	심인경	
	''	591-22	''	54.5	591-62	''	27.1	전농동 590-10	김옥근	
	''	591-23	''	52.2	591-23	''	19.6	''	''	
	''		''		591-63	''	32.6	''	''	
	''	591-26	''	29.6	591-26	''	8.7	전농동 589-7	박결원	
	''		''		591-64	''	20.9	''	''	
	''	591-30	''	48.6	591-30	''	8.3	전농동 589-4	황능자 박봉숙	국민은행 근저당
	''		''		591-65	''	40.3	''	''	
	''	591-45	''	38.2	591-45	''	38.2	전농동 286-2	김경남	
	''	591-48	''	25.2	591-48	''	25.2	전농동 589-9	권창홍	
	''	591-47	''	33.6	591-47	''	33.6	''	''	
	''	591-46	''	8.2	591-46	''	8.2	''	''	
	''	591-49	''	8	591-49	''	8	''	''	

순 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동대문구 전농동	591-42	대	5.5	591-42	대	5.5	전농동 589-10	임동근	
	"	591-43	"	0.6	591-43	"	0.6	"	"	
	"	591-44	"	0.7	591-44	"	0.7	전농동 589-9	권창홍	
	"	591-39	"	21.3	591-39	"	21.3	"	"	
	"	591-41	"	23.8	591-41	"	23.8	전농동 589-10	임동근	
	"	591-40	"	3.9	591-40	"	3.9	"	"	
	"	591-35	"	1	591-35	"	1	전농동 589-6	이건하	
	"	591-36	"	2.6	591-34	"	2.6	"	"	
	"	591-31	"	20.5	591-31	"	1.2	"	"	제일은행 근지당
	"		"		591-66	"	19.3	"	"	"
	"	591-34	"	45.6	591-34	"	0.5	"	"	"
	"		"		591-67	"	45.1	"	"	"
	"	591-55	"	8.1	591-55	"	8.1	전농동 589-12 청량리동 203	김일환 문필환	

건 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건 물 구 조	평 수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동대문구전농동 590-8 ₉	연와조 와즙	1층14 2층9	전농동 590-8	김정숙
	" 590-7	복조 와즙	22.28	청량리동 172-6	박승환
	" 590-6	복조 초즙	9.20	전농동 590-6	송부성
	" 590-5	복조 와즙	41	" 591-57	조병석
	" 590-4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20.83	" 103-51	김태범
	" 589-10	복조 초즙	14.6	" 589-10	홍순덕
	"	"	12.5	"	"
	" 591-46 47	복조 와즙	15	" 589-9	권창홍
	" 591-39 44 49	복조 세멘와즙	1층15.83 2층15.83	"	"
	" 589-4	복조 와즙	22	" 589-4	황진후
	" 591-26	복조 도단즙	1층 23 2층 3	상봉동 453-38	박결원
	" 591-34,35 36,37	연와조 와즙	1층 12 2층 12	전농동 589-6	이전하
	" "	"	4.23	"	"
	" "	복조 와즙	33.15	"	"
	" 591-23	"	15	전농동 590-11	김옥진
	" 591-22	"	28	"	"
	" 591-23	"	17	"	"
	" 591-45	복조 스테트즙	23	청량리동 203	한필문
	" 591-30	복조 와즙	20	전농동 591-40	황능자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추출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성명	권종류 및 채권 고액	
1	동대문구 전농동	602-41	대	10.00	602-66	대	3.90	동대문구전농동 603	박경환			
2	"	602-42	"	15.20	602-67	"	7.90	" " 602-9	"			
3	"	602-43	"	13.00	602-68	"	9.00	경기양주군미금면금곡리 419	박수명			
4	"	602-69	"	10.00	602-69	"	10.00	동대문구전농동 602-11	안길용			
5	"	602-45	"	13.10	602-45	"	13.10	경기양주군진접면내곡리 252	김성태			
6	"	602-46	"	13.00	602-46	"	13.00	중구도동 2가 92	이종석			
7	"	602-13	"	30.90	602-70	"	1.80	"	"			
8	"	602-47	"	16.90	602-47	"	16.90	동대문구청량리동 61-355 " 답십리동 38	권명일 이대훈	국민 은행	근저당권 4,500,000	
9	"	602-14	"	47.80	602-71	"	6.00	"	"			
10	"	602-48	"	21.20	602-48	"	21.20	동대문구회경동 285-8	현홍섭			
11	"	602-15	"	46.40	602-72	"	9.90	"	"			
12	"	602-49	"	1.30	602-49	"	1.30	동대문구전농동 602-16	이은숙			
13	"	602-16	"	16.10	602-73	"	4.00	"	"			
14	"	602-50	"	16.20	602-50	"	16.20	동대문구전농동 602-17	장응식			
15	"	602-17	"	46.40	602-74	"	16.00	"	"			
16	"	602-51	"	1.90	602-51	"	1.90	동대문구전농동 602-34 " "	차숙경 박재선			
17	"	602-34	"	16.30	602-75	"	4.80	"	"			
18	"	602-52	"	16.90	602-52	"	16.90	동대문구전농동 603-1	조정구			
19	"	602-18	"	64.70	602-76	"	21.70	"	"			
20	"	602-53	"	16.90	602-53	"	16.90	동대문구청량리동 61-346	유인한			
21	"	602-19	"	62.60	602-77	"	20.50	"	"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주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성명	권종류 및 채권 고액
22	동대문구 전농동	602-54	대	0.80	602-54	대	0.80	동대문구보문동 4가 86	이정옥		
23	"	602-55	"	18.00	602-55	"	18.00	"	"		
24	"	602-21	"	72.80	602-79	"	24.70	"	"		
25	"	602-20	"	3.30	602-84	"	1.30	"	"		
26	"	602-56	"	18.40	602-55	"	18.40	종로구권농동 44-2	이용길	국민 은행	근저당권 3,500,000
27	"	602-22	"	87.80	602-80	"	30.30	"	"		
28	"	602-57	"	1.10	602-57	"	1.10	"	"		
29	"	602-35	"	2.60	602-81	"	1.40	"	"		
30	"	602-64	"	70.40	602-64	"	70.40	중구을지로 1가 100	주식회사 미봉상사	대한 공사	근저당권 31,62500
31	"	602-63	"	3.50	602-63	"	3.50	"	"		
32	"	602-65	"	7.10	602-65	"	7.10	"	"		
33	"	602-23	"	77.50	602-82	"	8.80	동대문구 상봉동 468-1	우성산업 주식회사	조흥 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9,600,000
34	"	602-24	"	42.70	602-83	"	1.10	"	"		
35	"	602-59	"	14.10	602-59	"	14.10	동대문구용두동 125-15	안인혁		
36	"	602-26	"	12.40	602-26	"	12.40	"	"	서울 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8,000,000
37	"	602-25	"	57.90	602-78	"	3.20	"	"		
38	"	602-60	"	29.90	602-60	"	29.90	동대문구전농동 602-27	정규봉		
39	"	602-27	"	22.90	602-27	"	22.90	"	"		
40	"	602-28	"	15.10	602-28	"	15.10	동대문구전농동 598-2	윤옥인		
41	"	602-32	"	0.90	602-32	"	0.90	"	"	조흥 은행	근저당권 6,500,000
	계	41필지					51830				

전 물 조 서					
순위	소재지	전물구조	평수	소유자	
				주소	성명
1	동대문구전농동 603 603-1	목조초층	7.00 12.20	전농동 603	박경환
2	" 603-1	목조세멘와층	1층 27.00 2층 25.50	경기양주군미금면금곡리 419	박수명
3	" 603-1	목조와층	16.63	전농동 603-1	김경혁
4	" 602-13 602-46	목조세멘와층	13.50	중구도동 2가 92	이종석
	" "	세멘부록조 세멘와층	1층 18.22 2층 6.72	"	이종석
5	" 602-14	목조와층	31.28	동대문구청량리동 61-355 동대문구답십리동 38	권영일 이대윤
6	" 603-1	목조와층	16.24 24.16	동대문구회경동 285-8	현홍섭
	" "	세멘부록조 평옥개	2.88	"	"
7	" "	세멘부록조외층	1층 9.84 2층 8.66	전농동 603-1	이은숙
8	" 602-17	목조와층	21.55	" 602-17	장응식
9	" 602-34	목조와층	10.00	" 602-34	차숙경 박재선
10	" 603	목조초층	23.00	" 603	조춘길
11	" 602	목조와층	25.00	" 602	홍상표
12	" 601	목조도단층 목조초층	10.00 10.00	동대문구보문동 4가 86	이진욱
	" "	목조도단층	3.00	"	"
13	" 600-1	목조세멘와층	27.77	종로구권농동 44-2	이용길
	" "	목조스레트층	6.15 7.50	"	"
14	" 598-3	목조와층	19.53	동대문구용두동 125-15	안인혁
15	" 602-27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31.88	전농동 602-27	정규봉
16	" 598-3	목조와층	21.31	전농동 598-2	윤옥인

◎서울특별시고시제 52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운동장시설)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5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 주창균에게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4. 19.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위치 : 영등포구온수동 34번지의외 17필지
-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설조성사업)
명칭 : 운동장
- 3. 사업시행면적 : 38,837 m²
- 4. 사업시행자주소 : 시내용산구후암동 244 - 111
성명 : 주창균

5. 사업의착수 : 인가후 1주일이내

준공 : 1973.10.30.

6. 사용할토지 : 사업시행자소유 (소유권 및 권리명세) 생략

7. 인가내용 : 별첨 인가증 및 도면 표시와 같음.



◎서울특별시공고제 73 호

환 지 처 분

(역촌토지구획정리지구)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별첨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되었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별첨 환지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1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973. 4. 17.

서울특별시장

공 고

◎ 서울 특별 시공고제 78 호

시영버스 운전원 모집 공고
시민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당 시에서는 시영버스 운전
원을 다음과 같이 널리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모집인원 : 00명
- 2. 응모자격 : (1) 제 1종 대형자
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로서 2년이상 유경험
자 (30세이상 50세미
만인자)
(2) 신원보증서 제출이 가능한자
- 3. 등록기간 : 1973.4.21-1973
4.30. (10일간)
- 4. 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사진 (명합판) 2매
- 5.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
면독동 378번지 자동
차운수사업소 (전화 97-1678
96-3997)

6. 전형방법 : 간단한 면접과 실
기에 의함.

7. 특 전 : 채용후 특히 성적
이 우수한자는 특혜조
치가 있음.

8.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
은 위의 등록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3.4.

서울 특별 시 장

사 령

◎ 1973.4.18.
마포병원 (서대 지방간호기원 차영자
문병원과견)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 1973.4.19
서울특별시 상임위원 염세옥
지방노동위원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3.4.1. 자
대 통 령

◎ 1973.3.20
서울시지방병무청 행정서기 김시익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울 특별 시 장